대학인공지능(AI)활용및윤리규정 4-3-19

규정번호 4-3-19
제정일자 2026.3.23
최근개정
개정차수
관리부서 학사지원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공지능(AI)의 교육·연구·행정 분야 활용에 있어 인간 중심의 윤리적 가치와 책임 있는 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AI 활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학습·추론·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 및 시스템
2. 생성형 AI: 텍스트·이미지·음성 등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는 AI 시스템
3. AI 활용자: 본 대학의 교직원, 학생 및 대학 업무 수행자
4. AI 생성물: AI 활용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의 교육, 연구, 행정 및 기타 대학 운영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AI 윤리 원칙

제4조(인간 중심성) AI는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제5조(공정성 및 차별 방지) AI 활용 과정에서 데이터 편향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성) AI 활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AI 활용자에게 있다.

제7조(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AI 활용 사실 및 생성물의 출처는 필요 시 명확히 공개되어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의 설명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윤리) AI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련 법령과 대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성) AI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학습 분야 AI 활용

제10조(수업 및 학습 활용) ① 교수자는 수업에서 AI 활용 여부 및 허용 범위를 사전에 안내할 수 있다.

② 학생은 과제 및 학습 활동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별표1]과 같이 이를 명시

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부정행위 금지) ① AI 활용이 금지된 평가에서 AI를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본다.

② AI 생성물을 자신의 창작물로 무단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장 연구 분야 AI 활용

제12조(연구윤리) AI는 연구의 보조 도구로 활용되며 연구자의 책임을 대체하지 않는다.

제13조(저작권 및 저자표기) ① AI 생성물은 연구자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② AI는 연구 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연구 데이터 보호) 연구 데이터의 AI 활용 시 관련 법령 및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 분야 AI 활용

제15조(의사결정 지원 AI) 행정 의사결정에 AI를 활용하는 경우 인간의 최종 판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자동화 관리) AI 기반 자동화 업무는 정확성·공정성·보안성을 확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 및 감독

제17조(AI 운영체계) 대학은 AI 활용의 윤리적·책임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및 인식 제고) 대학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AI 윤리 및 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위반 시 조치)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7장 AI 윤리위원회

제20조(설치) 대학은 인공지능(AI)의 윤리적·책임적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심의를 위하여 AI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대학 AI 윤리 정책 및 운영 방향 수립
2. AI 활용 관련 윤리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정·개정

3. 교육·연구·행정 분야 AI 활용의 적정성 검토
4. AI 활용 관련 위험·분쟁 및 윤리 문제 심의
5. AI 활용 부정행위 및 위반 사례 검토
6. AI 개인정보·데이터 윤리 관련 사항
7. 기타 AI 윤리 및 책임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실장, 학생지원처장, 산학협력처장, 사무처장, 학술정보원장, 교수학습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 시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 업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24조(비밀 유지) 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 지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 부서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8장 AI 부정행위 처리 절차

제26조(정의) AI 부정행위란 교육·연구·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부적절하게 활용하여 공정성·윤리성 또는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7조(부정행위 유형) AI 부정행위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28조(신고 및 접수) ① AI 부정행위를 인지한 구성원은 관련 부서 또는 AI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조사) ① AI 윤리위원회는 신고 접수 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필요 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0조(심의 및 의결) ① 조사 결과에 따라 AI 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부정행위의 고의성, 영향, 반복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31조(조치) ①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별표2]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또는 시정 요구
2. 과제·시험 무효 처리
3. 연구결과 수정 또는 철회

4. 교육 이수 명령

5. 관련 학칙 및 규정에 따른 징계 요청

② 조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재심) ① 조치 대상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 절차는 AI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3조(보호 및 비밀 유지) ① 대학은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은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예방 및 교육) 대학은 AI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AI 생성물 표기 기준

1. 기본 원칙

①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내용은 필요한 범위에서 명시하여야 한다.

② AI 생성물은 작성자의 책임 하에 검증 후 활용하여야 한다.

③ AI는 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 표기 대상

구분		표기 필요 여부
1	아이디어 탐색 및 참고	필요 시 표기
2	문장 생성·요약·번역 활용	표기 필요
3	이미지·영상·음성 생성	표기 필요
4	코드 생성	표기 필요
5	데이터 분석 보조	필요 시 표기
6	단순 문법 교정	표기 제외 가능

3. 표기 방법(예시)

① 과제·보고서

- 본 과제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였으며, 결과물은 작성자가 검증·수정함.

② 논문·연구

- 연구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였으며, AI는 저자로 포함되지 않음.

③ 이미지·콘텐츠

- 본 이미지(또는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됨.

4. 표기 수준 기준

AI 활용 수준		표기 방식
1	부분 활용	본문 또는 각주 표기
2	핵심 내용 생성	별도 활용 명시
3	결과물 대부분 생성	AI 활용 상세 기술

5. 금지사항

① AI 생성물을 인간 창작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② AI 생성 결과 검증 없이 활용하는 행위

③ AI 활용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행위

6. 예외 : 교수자가 수업 특성상 별도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별표2] AI 부정행위 판정 기준표

구분	부정행위 유형	판정 기준	조치 수준(예시)
1	AI 생성물 무단 제출	AI 생성물을 출처 표기 없이 제출한 경우	경고, 과제 무효
2	평가 중 AI 사용	AI 사용 금지 평가에서 AI 활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험 무효, 징계 요청
3	표절·위조·변조	AI를 활용하여 기존 자료를 표절하거나 내용을 조작한 경우	성적 무효, 징계 요청
4	연구 부정행위	검증되지 않은 AI 생성 연구 결과를 사용하여 허위·왜곡된 연구 수행	연구 수정·철회, 연구윤리위원회 회부
5	개인정보 무단 입력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AI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시정 요구, 교육 이수, 징계 요청
6	허위 정보 생성·유포	AI를 활용하여 허위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생성·유포한 경우	경고, 시정 요구
7	AI 대리 수행	과제·보고서·논문을 AI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본인의 학습·연구 수행을 대체한 경우	경고, 과제 무효
8	반복적 위반	동일 또는 유사 부정행위를 반복한 경우	징계 요청
9	기타 윤리 위반	대학 AI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안별 판단